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. 3. 16 선고 2020가단2524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1. 3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시 C 답 1778.8m²에 관하여 2020. 11. 7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에 의한 판결)

판사허윤범

별지